

# 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1,836,811	9,055,104
일반회계	254,433,204	7,632,996
특별회계	47,403,607	1,422,108
공기업특별회계	14,278,978	428,36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278,978	428,369
기타특별회계	33,124,629	993,739
수질개선 특별회계	23,612,793	708,3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38,929	4,168
주택사업 특별회계	3,067,792	92,034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98,890	26,967
자활기금 특별회계	1,804,100	54,123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290,000	68,700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95,436	20,863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585,363	17,561
기반시설 특별회계	31,326	94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29,26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